

# 외식업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

2022. 09. 05. ~ 2022. 09. 25.

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 
걱정과 피해를 덜어보세요.

전국에 계신 사장님들께,  
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드립니다.



**외식업 사장님!**  
**풍수해 피해**  
**더 이상**  
**걱정마세요!**

전국 외식업 소상공인  
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

행정안전부 H 현대해상 배달의민족  
기업보험5부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2787호(유효기간 2022.09.01 ~ 2023.08.31)

'풍수해 보험'은?

✓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,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.

## 🔍 지원 대상 및 자격

- ✓ 사업자등록증상 '업태'가 음식점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업,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는 사장님
- ✓ 상시 근로자수(아르바이트 제외)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
- ✓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장님

## 🔍 지원 내용

풍수해 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(자부담금 0원)

1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, 실손 보상

### 🔗 보상 내용

#### 가입대상

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(시설, 집기, 재고자산 포함)

보상금액 -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

(지자체별 보상한도 상이, 인터넷 접수페이지 통해서 확인)

## 🔍 신청 기간

보험 접수 마감 이후, 일괄적으로 보험을 적용해드릴 예정입니다.

22년 09월 05일(월) ~ 22년 09월 25일(일)까지

\* 보험적용: 22년 09월 26일(월) ~ 23년 9월 25일(월)까지(보험기간 1년/소멸성)

## 🔍 제출 서류 - 아래 중 택1

- ① 소상공인 확인서 & 사업자등록증(신고필증)  
\*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 
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([바로가기](#))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
- ② 신청서, 소상공인 체크리스트([바로가기](#)) & 사업자등록증(신고필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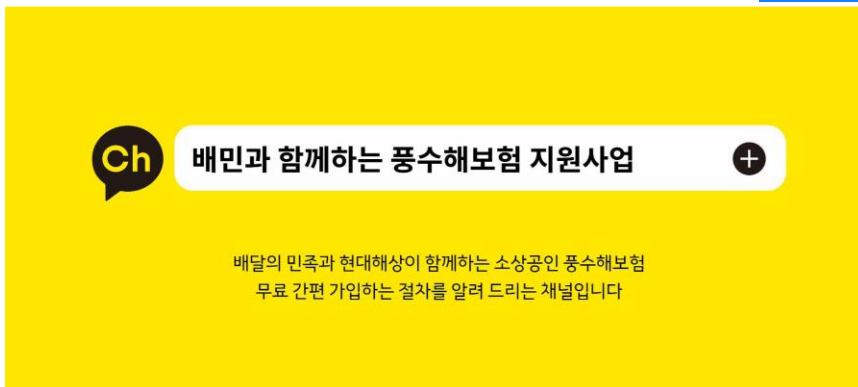
## 🔍 신청 방법

📖 온라인 접수 :

- ① 인터넷 접수 : <http://www.insboon.com>
- ② 이메일 접수: nexsol2020@naver.com
- ③ FAX 접수: 070-8670-1046

## 🔍 문의처

현대해상 상담전화(☎ 070-8670-1045) 또는 카카오톡 채널([바로가기](#)) 채팅창으로 문의주세요.



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
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→ QR코드 스캔 → 채널 추가

kakaotalk



※ 본 상품은 배달의민족과 행정안전부, 지역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,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보상하는 상품입니다.

※ 기업보험5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793호 (유효기간 2022.09.01~2023.08.31)

보상하는 손해

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(주의보·경보)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 
 보험의 목적이 태풍,호우  
 홍수, 강풍,풍랑, 해일,대설,지진(이하 '풍수해'라 합니다.)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은 물리적인 손해를  
 보상합니다.

 보상 재해 세부기준

구분		기준
태 풍		태풍 영향 강풍, 풍랑,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
호 우		3시간 강우량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
홍 수		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
강 풍		육상에서 풍속 14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/s 이상이 될 때. 다만, 산지는 풍속이 17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/s 이상이 될 때
풍 랑		해상에서 풍속 14m/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
해 일	폭풍해일	천문조, 태풍·폭풍·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.
	지진해일	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.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.5m이상 예상될때
대 설		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
지 진		국내 내륙에서 규모 3.5(인공지진 제외)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.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,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때

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
1.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
2. 풍수해로 생긴 화재, 폭발 손해(단,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)
3. 추위, 서리, 얼음, 우박으로 인한 손해
4. 보험계약일 현재 \*이미 진행중인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로 인한 손해  
 \* 이미 진행중인: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(홍수통제소 포함) 기상특보(주의보경보)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
6. 바람, 비, 눈, 우박 또는 모래,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(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 된 경우 보상)

7. 축대,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(단,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)
8. 바람, 비, 눈, 우박 또는 모래,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

※ 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링크([바로가기](#)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가입시 유의사항]

\*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. \*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 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.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하지 않습니다 . \*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. \*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